

질 문

시민단체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이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설립 목적, 공공성 정도, 예산의 지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 반면,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 문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도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공공기관에게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정보를 청구한 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의 증대보다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 ▶ “특정 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모일 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한 사전정보 공표의 경우 인터넷에 공표된 행정 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후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 정보와 단순·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 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는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 사안의 성격의 정보는 사전 공표 대상이며,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 목록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 ▶ 따라서 사전 공표된 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 문

폐기되었어야 할 과세 대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것이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 “본인 소유의 구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장”의 정보가 폐기되었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부득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정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의 부존재”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알고 청구서상에 그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정보 주체인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질 문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00학교 생활기록부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생활기록부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 자체를 공개 요청 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모든 국민’의 범주에는 법인격이 부여된 사법상의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포함되며, 국민에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私人의 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조직단위에 해당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독립적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위에서 설명 드린 법 제5조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해석상 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공공기관 사이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고,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 요구는 『사무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는 자료 요구의 근거법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처리시 주고받는 팩스나 그룹웨어의 경우 과장님 자체 결재는 받지만 문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외부(타 기관 및 개인 등)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 ‘업무연락이나 관리통신문’의 정보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매체가 팩스(모사전송)라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였기 때문에 청구대상 정보이며, 그 매체가 그룹웨어라면 부서장의 결재 여부와 관련없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청구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질 문

몇 박스가 될 정도로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 참고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악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8.24. 2004두2783)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①“~일체”식의 과다 청구는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표된 ‘정보 목록’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청구 항목을 청구서에 기재한 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의 비공개 결정 통지, ②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을 적용(공개 방법 직권 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 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③열람 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사전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질 문

정보공개 청구 중 즉시공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6조의 “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예시를 들면, ①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ex : 통계자료), ②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③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정보, ⑤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⑥해당 정보에 이해관계인(제3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⑦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의 이송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⑧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 ▶ 즉시공개 처리 방법은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며,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문

사전공표 대상 정보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사본 출력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URL(접근경로 : 인터넷 주소명) 안내로 공개 결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 및 교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7-01715)가 있습니다.

질 문

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먼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질 문

내 공무원, 공공기관, 관공서의 체납 현황 및 처리내용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름, 주민번호 등을 삭제하여 가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행정소송 판례(서울행법 2006.12.29. 선고2006구합20716 판결) 역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 문

공개 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관인 목록 및 관인 대장을 청구했는데, 전자파일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 관인 목록 및 관인 대장은 관보에 사전 공표된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하나, 이의 공개와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관보 목록 및 관보 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의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질 문

청구인(수용자)이 본인과 접견(면회)한 녹음파일을 문서형태인 녹취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와 관련, 정보 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공공기관에게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녹음 파일 형식의 녹취록을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후 별도 가공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녹취록에는 제3자의 발언 내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녹취록의 가공 공개 여부, 부분공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와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앞서 해당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공개 형태를 열람뿐만 아니라 ‘사본·복제물’ 교부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 문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정보의 부존재는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거나 소관기관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비공개 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정보의 부존재’를 비공개 결정으로 통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둘째, 부존재의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고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 문

공공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특정 기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 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 ▶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 또는 『상법』 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 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 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입법 취지·목적, 예산의 지원 여부, 업무의 공공성(위탁 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 청구의 관련 기관 이송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소관기관으로 지체없이 이송해야 됩니다.
- ▶ 이송 방법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송된 정보공개 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 문

OO학교가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서류가 이송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접수하라고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요?

 답 변

-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 처리의 책임은 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관 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 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 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송 처리 불가”의 개념은 소관 기관 이송 대상 공공기관이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시스템 상으로 이송 처리가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안으로서 시스템에서 이송 처리 불가시 공공기관은 해당 청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질 문

청구서 Fax 신청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지와 대리인이 Fax로 정보 공개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정보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의 규정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 ▶ “대리인이 팩스로 정보공개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본인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통지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개 요청할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질 문

민원인이 동일 사안에 대해 상급 기관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3~4일 이후에 상급 기관에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상급 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되었을 경우 이는 비록 동일한 내용이라도 내부 종결 할 수 없으며, 각각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2회까지 처리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3회 청구하면 이 때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동법 제2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함)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 문

제3자 의견 청취시, 청구인의 정보(이름, 주소)를 알리는 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상충되지 않은지요?

 답 변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 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을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법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접수 받는 제5호 서식에는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술로 직접 접수 받는 제6호 서식에도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 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 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 서식인 문서를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질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절차 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 정보의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 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결정일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준 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답 변

- ▶ 우리부에서는 ① 정보공개 제도 운영 매뉴얼, ② 정보공개 세부 기준 매뉴얼, ③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매뉴얼 3가지를 “우리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정보공개-01.정보공개-사전 정보 공개”란에 해당 원고를 등재하고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기 바랍니다.
- ▶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는 대공무원 창구(admin.open.go.kr)의 “Quick Link” 메뉴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면 됩니다.

질 문

국회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 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 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 ▶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 비율은 50~10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 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 “심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다만,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8호에 정보공개 위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개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킬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 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 ▶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 변호사와 같이 법정 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② 임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문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답 변

-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 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 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 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 목적(청구 취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형량 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 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종결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공공기관에서 내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를 종결할 수 있으며,

둘째,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정보 공개 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포함된 기간 산정 중 토·일요일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결정 기간의 기산점으로 ① 청구인 직접 방문 청구시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 인터넷 청구시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하고 있으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 5일 이하의 처리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6일 이상 처리 기간에는 산입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부담 경감을 위해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간 산정 기준

초일 산입 · 공휴일 불산입 -민원사무법 제6조(6일이상 민원)-	초일 불산입 · 공휴일 산입 - 민법 제6장 -
① 법 제11조 제1항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① 법 제18조 제1항 결정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② 법 제11조제2항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	② 법 제21조 제3항 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간격을 둠
③ 법 제11조 제5항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	③ 영 제12조 제1항, 제3항 공개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범위 내 공개 일시 정하여 통지, 통지 후 10일 경과시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④ 법 제18조 제2항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④ 법 제21조 제1항 청구 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질문

이의신청 통보시 “이의처리 결정”에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체 인용 4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 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부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는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고, ② 기각은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③ 부분인용은 전부 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 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④ 전체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 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질 문

도면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A3를 초과하는 도면에 대하여 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1장당 2000원)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제7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 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토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 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롬, 디스켓 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 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 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 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 문

공공기관인 학교와 국가 기관인 교육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사항 인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 기관에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 ▶ 따라서, 각급 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역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 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범위에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은 ①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②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또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④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입니다.
- ▶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가급적 외부 전문가 위촉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질 문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우표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 ▶ 이에 따라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우송 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 문

정보공개심의회의는 서면 심의가 가능한지요? 서면 심의의 경우에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서면 심의는 가능합니다. 서면 심의로 추진시 참석 수당은 '자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시간 및 기준은 내부 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 문

청구인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의미는 청구자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무원이 원본의 정보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 공무원이 조작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징계별과 형사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방법고정청 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 문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인용(공개) 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사항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 문 한시적 비공개는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경우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해야 합니다.
-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 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질 문

민원인이 이미 교부 받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가 아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질 문

지역 신문사에서 지역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였는데, 감면이 가능한 것이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상 비용 부담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에 언론사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 비율은 50~10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 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 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 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 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정보의 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권자는 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당해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닌 전부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쟁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 결정 후, 정보공개 일시를 통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개 기간이 지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변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 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재량 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 ▶ 따라서 전후 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 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